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3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문금주 · 박해철 · 김성범
황정아 · 이개호 · 김기표
이정문 · 어기구 · 권향엽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12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2.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전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u>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생략) <u>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u>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u> 2. <u>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